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나. 발의자: 임현호 의원 외 6명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현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·조기검진·건강관리·인식개선에 관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 또한, 금연, 운동, 영양개선 등 생활습관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,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을 줄임으로써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영등포를 실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추진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- 실태조사(안 제5조)
- 지원사업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·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의무, 실태조사, 지원사업, 교육,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-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역 주민 대상 검사로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 후 등록 관리,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지속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비밀누설의 금지, 포상,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명시 하여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음.

○ 검토결과

-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심장(心)과 뇌(腦)의 혈관에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크게 심혈관질환(심부전, 부정맥 등)과 뇌혈관질환(뇌졸중, 뇌출혈 등)으로 구분됨.
- 통계청의 2024년 사망 원인 순위를 살펴보아도 2위와 4위에 각각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며, 발병 시 언어장애,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·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임.
- 이러한 배경 하에 상위법인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·지원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제16조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더불어 본 조례 제정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추진계획, 실태조사,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구민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·행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전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곳뿐이며,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여겨짐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임현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38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 의 자 : 임현호 · 정선희 · 이규선
차인영 · 최봉희 · 최인순
우경란 의원 (7인)

1. 제안이유

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,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그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 특히 심근경색, 협심증, 뇌졸중 등은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임.

이에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·조기검진·건강관리·인식개선에 관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또한, 금연, 운동, 영양개선 등 생활습관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,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을 줄임으로써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영등포를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추진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(안 제5조)
- 마. 지원사업 (안 제6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.
2. “심뇌혈관질환관리”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, 진료,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
4.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5.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
7.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-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.

1.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
2.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
3.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
4.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
5.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·운동·영양·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
6.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
7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교육) 구청장은 구민과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) 구청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등록관리) 구청장은 발견된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포상)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